

작성 방법

이 서식은 「소득세법」 제148조의2제5항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자가 비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배제되도록 금융회사 등에 제출하는 서식입니다.

- ①~④ 란: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.
- ⑤ 계좌번호란: 비과세 대상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한 거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.
- ⑥ 금융투자소득 상세구분란: 「소득세법」 제87조의6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을 구분하되 다음과 같이 해당되는 상세코드를 적습니다.

| 구분 | 주식등(10) | | | | | 채권등(20) | | | | | 투자계약증권 | 집합투자기구(40) | | 파생결합증권(50) | | | | | 파생상품(600) | | | | | | | | | | |
|----|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|----|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|----|----|
| | 상장 | | | 비상장 | | 국채 | 지방채 | 특수채 | 회사채 | 외국채 | | 기타 | 공모 국내 주식형 적격집합 투자기구 | 그외 | E L W | E L S | D L S | E T N | 골드 뱅크 | 실버 뱅크 | 기타 | 선물 | 선도 | 스왑 | 콜옵션 | 풋옵션 | C F D | 기타 | |
| | 코스피 | 코스닥 | 코넥스 | K-OTC 거래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그외 |
| 코드 | 11 | 12 | 13 | 14 | 15 | 19 | 21 | 22 | 23 | 24 | 25 | 29 | 30 | 41 | 49 | 51 | 52 | 53 | 54 | 55 | 56 | 59 | 61 | 62 | 63 | 64 | 65 | 66 | 69 |

- ⑦ 국내/국외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69조의2에 따른 국외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증권 또는 파생상품인 경우 코드 "9" 로 적고, 그 외는 "1" 로 적습니다.

| 구분 | 국내 | 국외 |
|----|----|----|
| 코드 | 1 | 9 |

- ⑧ 증권표준코드란: 한국거래소(비상장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한국금융투자협회)에서 증권상품에 개별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12자리 고유번호를 적으며 표준코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권 등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※ 국외증권의 경우 국제증권식별번호(ISIN코드)를 적으며 동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발행법인의 소재 국가코드를 적습니다.
- ⑨ 금융투자상품명(종목명)란: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한 금융투자상품의 상품명(종목명)을 적습니다. 상품명에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권 등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.
- ⑩ 수입시기(양도일자)란: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0조의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(주식등의 경우 양도시기)를 적습니다. 수입시기(양도일) 도래 전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(종목)의 계좌개설일을 적습니다.
- ⑪ 양도 등 수량란: 양도(환매·분배등을 포함)한 금융투자상품의 총수량(주수, 좌수 등)을 적습니다. 수입시기(양도일) 도래 전인 경우 공란으로 둡니다.
- ⑫ 양도 등 가액란: 양도(환매·분배등을 포함)한 금융투자소득의 구분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적습니다. 수입시기(양도일) 도래 전인 경우 공란으로 둡니다.
 - 주식등, 채권등, 투자계약증권소득: 해당 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
 - 집합투자기구소득: 집합투자증권 환매등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
 - 파생결합증권소득: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,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의 총액
 - 파생상품소득: 소득세법 제87조의16에 따른 파생상품소득금액
- ⑬ 취득가액란: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에 든 실제 취득가액(취득 부대비용 포함)을 적습니다.
- ⑭ 금융투자소득금액란: 「소득세법」 제87조의8, 제87조의9, 제87조의10, 제87조의14, 제87조의15 및 제87조의16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금액(비과세 금융투자소득금액을 포함한 금액)을 적습니다.
- ⑮ 비과세 금융투자소득금액란: ⑭ 금융투자소득금액 중 비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금액을 적습니다.
- ⑯ 비과세 근거법령란: 비과세하는 근거법령을 아래의 구분에 따른 코드로 적습니다.

| 구분 | 비과세 종합저축 | 재형 저축 |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(ISA) |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 등에 대한 출자 (조특법 § 14①) |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(조특법 § 16의4) |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 (§ 88의4④) | 기타 |
|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코드 | 08 | 09 | 10 | 11 | 12 | 13 | 14 |